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11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김영호·김준혁·이기헌

박홍배 • 한민수 • 박용갑

문대림 • 박희승 • 김영배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 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단서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 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의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0.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서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 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2(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신 설> 등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 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 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 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9.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신 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
원체계 마련의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u>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u>
경우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
<u>야 한다.</u>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
원을 포함한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
<u> </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9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
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